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7 선고 2024가단663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김주만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2. 11. 24.

접수 제1336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2. 23. C과 혼인하였다가 2022. 12. 26. 협의이혼하였고, 원고는 2007. 9. 15. C의 아들인 D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와 D은 2022. 12. 12. C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2022드단36995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23.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드단50773호로 이송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별건 소송’이라 한다).

다. 별건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24. 1. 11. D이 C의 친생자임을 인지하고, C은 원고에게 2007. 9. 15.부터 2023. 12.까지의 과거양육비로 7,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2024. 1.부터 D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2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하 ‘별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별건 판결은 2024. 2. 1.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2022. 11. 23. 피고에게 C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22. 12. 12. 별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별건 소송 과정에서 2022. 12. 14.부터 2023. 1. 6.까지 사이에 C의 주소를 수회 확인하였는데 위 주소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C의 주소를 확인한 시기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원고가 C의 주소를 알았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별건 판결에서 인정한 양육비채권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양육비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사해행위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증여 등 법률행위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 수개월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보았거나 을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C이 협의이혼하기 약 한 달 전에 체결된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 피고와 C 사이에 협의이혼 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내용 중에 이 사건 증여계약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무영

별지